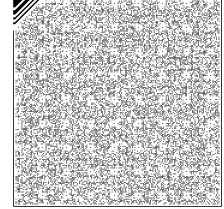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
1. 관련 :

- 가.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(보험급여과-2494, 2020.6.15.)
- 나.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강화 및 관리대책 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-38341호, 2021.11.30.)
- 다.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(보험급여과-6002, 2021.12.1.)
- 라.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-27016, 2022.6.17.)
- 마.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(보험급여과-3402, 2022.7.4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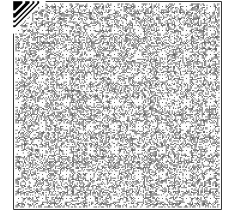
2.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변경사항 : 격리실 입원료 예외 인정 사항 적용 종료(2023.6.1.~)

기존	변경
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	적용 종료
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	적용 종료

*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붙임 참고

붙임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부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광역대책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,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

주무관 **박혜진** 보건사무관 **배운영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전결 2023.6.1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623 (2023. 6. 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7 / ellenpark12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